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1 선고 2015가단539917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6. 6. 24.

판결 선고2016. 7. 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50,677,277원 및 그 중 50,677,244원에 대하여는 2012. 4. 17.부터 2012. 11. 30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6. 4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나.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50,677,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4. 17.부터 2016. 4. 1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의 각 사실은,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,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, 갑 제3호증, 갑 제4호증, 갑 제5호증, 갑 제6호증의 1 내지 8,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주택금융신용보증

원고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'하나은행'이라 한다)은 2011. 2. 11.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9,500,000원, 보증기한을 2013. 2. 11.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하나은행 부평지점에게 보증금액을 49,500,000원, 보증기한을 2013. 2. 11.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(이하 '이 사건 보증서'라 한다)를 발행하였다.

나. 주채무의 내용

하나은행 부평지점은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2011. 2. 11. 피고 A과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5,000,000원을 변제기한을 2013. 2. 11.로 정하여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.

다.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

- (1) 대위변제금 피고 A은 2011. 11. 23.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2012. 4. 16.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50,759,28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.
- (2) 대위변제금의 일부 회수 원고는 2012. 4. 17. 피고 A으로부터 82,040원을 회수하여 변제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50,677,244원(= 50,759,284원 -

82,040원)이다.

(3) 지연손해금 (가) 손해금율

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주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 소정의 연 20%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,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위 이행일 다음날인 2012. 4. 17.부터 2012. 11. 30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%이다.

(나) 확정손해금

위 (2)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2. 4. 17. 82,04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, 위 회수금 82,04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. 4. 17.부터 회수일인 같은 날까지 1일간의 확정손해금을 위 (7개항의 손해금율에 따라 산정하면 33원($= 82,040\text{원} \times 15/100 \times 1/365\text{일}$, 원 미만 버림)이다.

라.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

(1)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보증약정의 임차목적물인 인천 부평구 C 주택 2층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된 재직 관련 서류를 하나은행에 교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55,000,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.

(2) 피고 A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원고가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조직된 소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인 피고 B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았고, 2011. 2. 11.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재직 관련 서류에 기재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,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이 사건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

55,000,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.

(3) 이로써 피고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. 2. 11.

55,000,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.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하나은행에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2012. 4. 16.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과 이자 등으로 50,759,284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의 합계 50,677,277원(= 대위변제금 잔액 50,677,244원 + 확정손해금 33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0,677,24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. 4. 17.부터 2012. 11. 30.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4. 15.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피고 A 등과 공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,000,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2012. 4. 16.

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원금과 이자 등으로 50,759,284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고, 대위변제일인 2012. 4. 16.경 하나은행이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대로 이전하였으므로,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A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기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50,677,2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2. 4. 17.부터 이

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4. 1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석문